

HSBC 전자외환거래시스템 약정서

이 약정서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하 “HSBC”) 과 [] (이하 “고객”) 간에 20 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

이 약정서는 HSBC 를 통하여 제공되는 외환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위한 전자외환거래시스템 (RADS : Reuters Automated Dealing System) (이하 “시스템” 라 합니다)과 관련됩니다. 고객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장정보, 가격결정, 조사, 기타 조회 및 시스템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는 외환거래(현물환, 선물환, 스왑)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정 의

- ① “이용코드” 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접근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각 사용자가 사용하는 전자 고유코드 (비밀번호, 디지털 확인서, 이용코드, 암호 및/또는 기타 인증 또는 보안 장치 등)
- ② “기타약정서” 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는 기타 고객과 HSBC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서를 의미합니다.
- ③ “소프트웨어” 는 고객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HSBC 가 고객에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④ “거래계약” 은 고객 약정서 또는 약관, 중개 약정서 또는 약관, ISDA 기본계약, 국제외국환 및 옵션기본계약, 국제통화옵션마켓팅 기본계약, 국제외국환 기본계약, 기타 유사 약정 또는 약관 등 외환거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여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⑤ “사용자”는 고객이 지정하며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접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⑥ “사용자설명서”는 시스템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또는 시스템 및/또는 서비스에의 고객의 접근 또는 이용에 적용되는 특정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목적으로 HSBC가 고객에 제공하는 사용자기술지침서 및 기타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HSBC가 수시로 최신일 기준으로 수정 또는 개정합니다.

제 2 조 약정 범위

고객은 사용자설명서에 따라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HSBC 와 외환거래를 체결하거나, HSBC가 임의로 고객에게 수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 합니다. 이 약정서는 거래계약 또는 기타약정서의 규정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약정서 조건과 거래계약 또는 기타약정서의 조건이 상치되는 경우 이 약정서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3 조 보안 및 지시의 효력

- ① HSBC는 고객에 단일 또는 수개의 이용코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용코드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수권 임직원 또는 대리인만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접근하는 경우만 이용코드를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②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소프트웨어 및 그 이용코드의 기밀유지 및 보안을 보장하고 그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 또는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절차를 이행합니다. 고객은(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를 준수하고 이용코드, 시스템 및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보안절차 및 HSBC의 지시사항을 항상 따릅니다. 고객은 외환거래를 체결하는 자가 고객에 의하여 적절히 수권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HSBC가 고객에게 전자인증서 및/또는 확인서를 송부한 경우 이용코드의 사용을 통하여 효력을 갖는 여하한 메시지 또는 지시에 구속됩니다.
- ③ HSBC는 HSBC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된 통신장애, 고객의 컴퓨터 시스템장애, 기타 공중통신의 오류로 인하여 HSBC가 고객의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를 수령할 수 없거나 고객이 HSBC의 전자 인증 및/또는 확인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장애 및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

- ① HSBC는 서비스의 일부로 작성된 여하한 정보, 주석 또는 분석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또는 결과의 적절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또는 달리 제공되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② HSBC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관련 자문, 기타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투자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은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고객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방 또는 위법의 내용,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거나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해가 되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지 아니하며 위법거래 또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 3 자가 HSBC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고객 및 여하한 사용자는 시스템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이 적법한 관할지에서만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⑥ 고객과 HSBC가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고객은 시스템의 사용 및 이로 인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를 합니다.
- ⑦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여하한 확약, 동의 또는 약정에 구속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전자전송을 통하여 HSBC로부터 수령된 지시들에도 구속된다. 고객은 “약정함”, “동의함”, 기타 유사한 문구가 새겨진 항목에 마우스, 키 또는 기타 컴퓨터 장치를 작동하여 가격 또는 기타 사항을 수락하는 경우, 고객의 그러한 수락, 약정 또는 동의는 적법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가능하며 고객의 서면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 ⑧ HSBC는 언제든지 고객에 대한 최소 14 일전의 서면 통지로써 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지 또는 접근제한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단, 가. 시스템 및 서비스의 중지 또는 접근제한이 HSBC 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예를 들면, 기술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나. 고객이 이 약정서상의 고객의 의무 또는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위 제 4 조 제 4 항의 금지사항 포함), 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지적소유권

① 시스템, 사용자설명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적소유권(등록 여부를 불문함)은 HSBC 또는 이의 사용권 허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HSBC 가 소프트웨어 및/또는 사용자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HSBC 는 오로지 시스템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고객의 내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약정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취소불능의 비배타적인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분해모방, 분해 혹은 해체하도록 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되며(단, 법률에 의거 명백히 허용된 경우는 제외함), 여하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사용자설명서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복사, 복제해서는 안됩니다(단, 법률에 의거 명백히 허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고객은 가. HSBC 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나. 반출 관련 모든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나 사용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한 경우가 아닌 한, 암호기술을 재 유포하거나 재 반출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기간 및 종료

① 시스템과 서비스의 사용은 제 6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② 기타 권리나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HSBC 는 고객에 대한 최소 14 일전의 서면 통지로써 언제라도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HSBC 가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고객이 거래계약을 위반한 경우 고객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발적인 합병이나 구조조정 이외의 사유로 도산하거나, 상대방이 채권자들과 일반적인 화의 또는 화해를 체결하거나 이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어느 관할권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전술한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시스템과 서비스 사용의 종료시 고객은 즉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설명서의 사용, 시스템에의 접근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하고, (HSBC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설명서의 모든 사본을 HSBC에 반환하거나 폐기한 후 HSBC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시스템과 서비스 사용의 종료는 기 발생한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7조, 제8조 및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의도된 이 약정서상 다른 조항의 효력 또는 동 효력의 지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장, 책임의 제한 및 면책

① HSBC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HSBC는 시스템 및 외환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가.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 요소의 존재 또는 나. 여타 정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하여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 약정서상 명시된 명백한 보장을 제외하고, HSBC는 특정 목적에 따른 판매가능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여하한 정보의 정확성 및/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고객 또는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법률에 의한 것이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든,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든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모든 보장, 조건, 보증이나 진술을 부인합니다. HSBC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오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중지현상 없이 작동할 것이라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스템이 제공되는 서버 또는 이와 연결된 시스템상에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이나 보장(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을 하지 않으며, 고객은 이를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③ HSBC는 고객이 시스템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설명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여하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위에서 말한 손실이나 손해는 간접적, 결과적 또는 특별 손실이나 손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HSBC가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가 HSB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HSBC는 고객이 시스템,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설명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위에서 말한 손실이나 손해는 이익이나 수익의 상실, 자료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영업시간의 손실, 사업의 손실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HSBC가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가 HSBC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위 제7조 제3항 및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각각 개별적인 책임면제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⑥ 고객은 고객이 이 약정서의 조건에 따른 자신의 의무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HSBC가 내린 관련 지시, 절차 또는 경고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손해, 청구, 비용 및 경비(변호사비용, 거래손실, 자금조달비용, 또는 HSBC가 그렇게 결정하고 앞서 말한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HSBC가 헛지 포지션 또는 관련된 거래포지션을 해지, 청산, 취득 또는 재설정하는데 드는 손실이나 비용을 포함함)로부터 HSBC를 면책하고 이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단, HSBC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은 고객의 내부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HSBC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약정서상 HSBC에 대한 책임의 면제와 제한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 8 조 비밀유지

HSBC는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객 관련 정보를 HSBC의 본사, 지점, 자회사 및 관계사 또는 외국의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HSBC는 그러한 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9 조 기타사항

① HSBC는 이 약정서의 규정 및 또는 사용자설명서 내용을 개정하거나 거래처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HSBC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HSBC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HSBC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정서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⑥ 각 당사자는 이 약정서의 규정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따르기로 하며, 또한 이약정서의 조건과 관련한 소송이나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위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절차의 재판지에 대한 결정을 사유로 각 당사자가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당해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불편한 법정지에서 제기되었다는 주장을 포기하며, 나아가 당해 소송이나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당해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⑦ 각 당사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한도 내에서 각 당사자, 이의 수익이나 자산(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용하려고 의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에 대하여 가. 소송, 나. 재판관할권, 다. 유지명령, 특정이행명령 또는 재산회복명령을 통한 구제조치, 라. 자산가압류(판결전후를 불문함), 그리고 마. 어느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절차에서 각 당사자 또는 이의 수익이나 자산에 대하여 달리 부여될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판결로부터의 면책을 취소불능으로 포기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허용되는 최대한도 내에서 어느 소송이나 법적절차에서도 당해 면책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⑧ 이 약정서의 조건 중 여하한 조건이 무효인 것으로 어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머지 조건은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⑨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전자우편 또는 기타 전자수단에 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상기의 우편을 수령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⑩ 이 약정서의 조건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도 제3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없습니다.

⑪ 이 약정서가 한글 및 영문으로 체결되고 만약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는 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수권받은 임원과 고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홍 콩 상 하 이 은 행 서 울 지 점

서명 :

성명/직위 :

통지주소 :

고객명

서명 :

성명/직위 :

통지주소 :